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0가단500881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4. 12.

판 결 선 고 2021. 7. 20.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6,960,467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960,46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및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7. 13.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522)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9. 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2. 31. D으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아 2019. 5. 10.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위 승계집행문은 2019. 10. 15. C에게 송달되었다. 2020. 1. 10.을 기준으로 한 위 판결금 채권의 원리금은 36,960,467원이다.

다. E은 별지 목록 각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8. 5. 22. 사망하였다.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C, F, G, H, I이 있었다.

라. E의 상속인들은 2018. 11. 3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와 2018. 11. 30. 접수 제82772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하여 위 판결에 따른 양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안산시 단원구청, 화성시 J,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무상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C은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C의 지분(2/13)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그 실질이 상속포기와 동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와 상속포기는 그 주체, 방식, 내용, 성질 및 효력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피고가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게 되는 결과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와 같다는 점만으로 상속포기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반환해야 한다.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와 가액반환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며,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2)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11.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K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저당권의 제한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 상속지분(2/13)을 원래대로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다

3)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 10.까지의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액수는 36,960,467원이고,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지상 4층의 원룸형 다세대주택으로, 그 가액 합계가 근저당권설정의 채권최고액인 3억 1,200만 원을 초과함은 분명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상속지분 2/13에 해당하는 최소 공동담보가액은 46,153,846원이 된다. 그중 적은 금액인 피보전채권액 36,960,467원이 가액반환 범위가 된다.

4)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2/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6,960,467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36,960,467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도로명주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 철근콘크리트구조 16.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대 216.1㎡

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 : 1 소유권대지권 216.1분의 11.99

2.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도로명주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 철근콘크리트구조 15.1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대 216.1㎡

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 : 1 소유권대지권 216.1분의 10.94

3.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도로명주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 철근콘크리트구조 16.6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대 216.1㎡

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 : 1 소유권대지권 216.1분의 12.00

4.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도로명주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 철근콘크리트구조 17.4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대 216.1㎡

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 : 1 소유권대지권 216.1분의 12.60

5.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도로명주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 철근콘크리트구조 18.9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대 216.1㎡
 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 : 1 소유권대지권 216.1분의 13.66
6.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도로명주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 철근콘크리트구조 2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대 216.1㎡
 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 : 1 소유권대지권 216.1분의 16.58
7.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도로명주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 철근콘크리트구조 20.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대 216.1㎡
 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 : 1 소유권대지권 216.1분의 14.88
8.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도로명주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 철근콘크리트구조 15.9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대 216.1㎡
 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 : 1 소유권대지권 216.1분의 11.52
9.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도로명주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 철근콘크리트구조 17.4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대 216.1㎡
 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 : 1 소유권대지권 216.1분의 12.60

10.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도로명주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 철근콘크리트구조 18.9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대 216.1㎡
 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 : 1 소유권대지권 216.1분의 13.66
1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도로명주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 철근콘크리트구조 2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대 216.1㎡
 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 : 1 소유권대지권 216.1분의 16.58
12.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도로명주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 철근콘크리트구조 20.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대 216.1㎡
 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 : 1 소유권대지권 216.1분의 14.88
13.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도로명주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 철근콘크리트구조 15.9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대 216.1㎡
 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 : 1 소유권대지권 216.1분의 11.52
14.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도로명주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 철근콘크리트구조 26.3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대 216.1㎡
 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 : 1 소유권대지권 216.1분의 19.18

15.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도로명주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 철근콘크리트구조 16.1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대 216.1㎡
 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 : 1 소유권대지권 216.1분의 11.65

16.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도로명주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 철근콘크리트구조 16.4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대 216.1㎡
 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 : 1 소유권대지권 216.1분의 11.86

- 이상 16 건 -

